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2018. 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친환경농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축산물에서 농약사용 금지 등 위생안전 관리 규정 신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식품 인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별표 11)

1)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격년으로 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나.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1)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에서 “인증기관명” 항목을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

다.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추가 공고방법 마련(안 제60조제1항)

1)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을 공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 불편 최소화

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확대(안 제70조제1항)

1)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 확대

마.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별표 11)

-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 위생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산물의 품질관리 규정 보완
- 2)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보완

바.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 개선(안 별표 4)

- 1)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인증 유효 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사. 부정행위를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 1) 행정처분 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별기준을 인증사업자와 인증품등으로 구분
- 2)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
- 3)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9의2)

- 1)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자.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0)

- 1)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

2)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규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 세부항목별 처분기준으로 개선  
차.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사 확대(안 별표 13, 별표 14)

- 1) 공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유기합성농약을 추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try of Trade, try and Energy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4조 또는 제16조”로, “서류가”를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을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인증번호, 인증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항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를 “제36조를 준용하여 조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인력 및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력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폐기와 관련한 계획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을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및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 여부

- 2. 공시제품의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 여부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관리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을 “공시사업자의 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와 관련한 계획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번호”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을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처분 대상 재배·사육 필지, 행정처분 사항, 회수·폐기 계획 및 결과(인증품의 회수·폐기 처분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정지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하며, 같은 호 나 목 중 “세부”를 “회수·폐기, 세부”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증기관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가능 물질 중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의 사용가능 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별표 1 제1호가목2) 기호(○)의 사용가능 조건란 기호(○) 중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축사 및 축사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유기합성농약 등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맞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

별표 3 제2호가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2호다목 구비 요건란 1) 중 “유기합성농약은”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구비 요건란 2) 본문 중 “유기합성농약”을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세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3 제2호마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

별표 3 제3호가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3호나목 구비 요건란 1) 중 “없”을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로 하고, 같은 목 구비 요건란 2) 중 “축사의 사육 밀도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조건을”로 하며, 같은 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재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3 제3호마목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별표 3 제3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3호아목 구비 요건란 1) 중 “조용”을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으로 하고, 같은 목 구비 요건란 2) 중 “유기적”을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의 유기적”으로 하며, 같은 목 구비 요건란 3) 중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잔류 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3호의2가목에 5),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6)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

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3호의2마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4)의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

별표 3 제3호의2마목 구비 요건란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3호의2마목 구비 요건란 5) 각 세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기합성농약”을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세호 각 세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4호자목 중 “등(유기가공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으로 하고, 자목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별표 3 제5호가목에 2),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5호마목 구비 요건란 1)가), 나) 및 다)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세호 가), 나) 및 다)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세호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별표 4 제1호나목4) 중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3개월간으로 함”을 “1년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별표 5 제1호나목 중 ““유기농””을 ““유기””로, ““유기식품””을 ““유기식품”, “유기농””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4) 중 ““유기식품””을 ““유기””로

하며, 같은 목 8)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4) 전단 중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을 “인증번호:”로, “인증번호와 해당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같은 세호 4)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위반행위자”를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인증취소	

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아)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3) 유기축산물			자)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차)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4) 유기양봉 제품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	인증취소		가)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나) 꿀벌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인증취소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다)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라) 유기양봉 제품에서 꿀벌의 먹이 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마)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바)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사)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5)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취소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	인증취소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라)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6)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사)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자)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시정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8)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인증취소		
나)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이하로 검출된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다)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	인증취소		

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마)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바)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바. 인증종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사.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시정명령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정지
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정지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변경
라.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마.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바.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별표 9의2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별표 9의2 기호(※) 중 “제3호”를 “제2호, 제4호”로 하고, 같은 기호(※) 중 “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을 “외국에서 활동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기호(※) 중 “위 표의 자격기준에 준하는”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기호(※)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 단서 중 “우수”를 “양호 이상의”로,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받은 처분횟수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차목 중 “지정기준에”를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시설이”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차.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이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1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

별표 11 제2호가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11 제2호다목 구비 요건란 1) 중 “유기합성농약은”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구비 요건란 3) 본문 중 “유기합성농약”을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세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를 취할 것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11 제2호차목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11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

별표 11 제3호가목에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별표 11 제3호나목 구비 요건란 1) 중 “축사의 사육 밀도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조건을”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11 제3호라목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별표 11 제3호마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별표 11 제3호바목 구비 요건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만, 포유, 거세 등 축종별 질병 취약 시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출생 후 2개월 이내,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젖소	시유	출생 후 2개월 이내, 분만
산양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시유	출생 후 1개월 이내, 분만
돼지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별표 11 제3호사목 구비 요건란 1) 중 “조용”을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으로 하고, 같은 목 구비 요건란 2) 중 “의

부”를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은 외부”로 하며, 같은 목 구비 요건란 3) 중 “동물용의약품은”을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잔류 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별표 1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별표 12 제1호다목9)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검토 기준란 3)라)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을 “유기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세호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음

별표 13 제3호나목 검토기준란 1)나)2) 중 “병원성미생물과 항생물질”을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유기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리신(Ricin)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3 제7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포장지 표시사항 및 광고”를 “포장지 표시사항”으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시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5호다목제출서류 제2호나목란에 제4항 및 나목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④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
⑤ 리신(Ricin) 검사성적서	△	

별표 16 제2호나목5) 중 “결”을 “결과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결”로 하고, 5)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3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49  
조제4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3 제3호의2 및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양봉 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의2 및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기양봉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11의 인증기준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4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9의2 제3호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제18조제1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5 및 별표 12에 따른 표시 도형과 인증정보 표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 다음 각 호의 ----- ----- ----- ----- ----- ----- ----- ----- ----- -----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생략) ③·④ (생략)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 ----- ----- 1. ----- -- 제10조·제14조 또는 제16조-----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 --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 설>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심사



제18조의3(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비식용유기가공품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항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발급--.

③ ----- 해당 수입신고인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를 준용





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4. (생략)

② (생략)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한 다음 각

-.

1.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

2. -----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처분 대상 재배·사육 필지, 행정처분 사항, 회수·폐기 계획 및 결과(인증품의 회수·폐기 처분에 한한다)

가. -----  
-----  
정지 처분-----

나. -----  
-----  
----- 회수·폐기, 세부 -----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71조(수수료)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이 농수산물조급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물조급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7. 6. 2.>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 (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난황(卵黃, 계란 노른자 포함)	○ <b>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b>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1) (생략)

- 2) (생략)

- 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4)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 중 **애완용 동물인 개·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1)에 따른 단미사료, 같은 목 2)에 따른 보조사료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 (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b>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b>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난황(卵黃, 계란 노른자 포함)	○ <b>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b>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축사 및 축사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유기합성농약 등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4)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 중 **애완용 동물인 개·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1)에 따른 단미사료, 같은 목 2)에 따른 보조사료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생략)	1) (생략)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중 허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인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b>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2·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b>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중 허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인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b>「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2·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b>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2017. 6. 2.> [시행일:2018.

1. 1.] 제3호사목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b>경영 및 단체 관리</b>	1) 별표 1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b>재배 포장, 용수</b>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b>일반</b>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b>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정명</th> <th>친환경농업 기본교육</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body>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b>재배 포장, 용수</b>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종자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적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적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와 <b>유기합성농약</b> 은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b>유기합성농약</b> 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및 단체 관리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종자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적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적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 <b>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b> 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b>유기합성농약 성분</b> 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일반 원칙 및 사육 조건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b>축사의 사육 밀도를</b> 유지·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두형성기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	조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 유(離乳)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

	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일반 원칙 및 사육 조건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조건</b> 을 유지·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4) <b>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b> 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	조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 유(離乳)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기간	축을 유기농장으로 인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b>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li> <li>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를 급여할 것</li> <li>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li> <li>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li> <li>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li> </ol>
사. 동물 복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li> </ol>

다. 전환 기간	<p>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인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b>아래의</b>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종</th> <th>생산물</th> <th>최소 사육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우·육우</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td> </tr> <tr> <td rowspan="2">젖소</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시유</td> <td>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td> </tr> <tr> <td rowspan="2">산양</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시유</td> <td>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td> </tr> <tr> <td>돼지</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육계</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td> </tr> <tr> <td>산란계</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 rowspan="2">오리</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td> </tr> <tr>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메추리</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사슴</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td> </tr> </tbody> </table>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시유	착유하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li> <li>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를 급여할 것</li> <li>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li> <li>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li> <li>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li> <li><b>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b></li> </ol>																																				
사. 동물 복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li> </ol>																																				

및 질병 관리	<p>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li> <li>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li> <li>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li> <li>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li> </ol>
아. 운송·도축·가공·장 등의 품질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축의 수송은 <b>조용하고</b>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li> <li>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b>유기적</b>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li> <li><b>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b></li> </ol>
자. 가축 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원칙 및 사육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li> <li>벌통의 반경 3km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li> <li>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li> <li>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li> </ol>

및 질병 관리	<p>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li> <li>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li> <li>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li> <li>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li> </ol>
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축의 수송은 <b>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하고</b>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li> <li>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b>사용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의 유기적</b>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li> <li><b>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b></li> <li><b>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b></li> </ol>
자. 가축 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원칙 및 사육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li> <li>벌통의 반경 3km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li> <li>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 것</li> <li>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li> </ol>

	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나. 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 기간	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라. 먹이 및 영양 관리	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	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투스, 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적사 화염
바. 생산물의 품질	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 기간	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라. 먹이 및 영양 관리	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	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투스, 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적사 화염 5) 3)·4)의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								
바. 생산물의 품질	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관리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유기양봉 제품에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꿀벌의 먹이섭식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입증되는 경우 0.01ppm 이하까지 허용
사.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요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정기적인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나. 가공 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관리 등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5)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사.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요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나. 가공 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용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제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제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 원료 및 가공 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유기 원료 및 가공 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유기농산물 등)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 허용	자.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경우만 해당한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취급장 시설 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나. 작업장 시설 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 관리	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다. 원료 관리	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라. 취급 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라. 취급 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사용하	마.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								

<p>지 않을 것</p> <p>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인 경우</p> <p>나)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p> <p>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인 경우</p> <p>2)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p>	<p>3)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p>
--	--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 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

[별표 4] <개정 2016. 8. 26.>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 가. 농산물·임산물
    - 1) 제배포장의 제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과종·식재일, 수확일
    - 2) 농산물·임산물 제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p>3)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p>
--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 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 가. 농산물·임산물
    - 1) 제배포장의 제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과종·식재일, 수확일
    - 2) 농산물·임산물 제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배품목과 제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리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4)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5) 질병진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배품목과 제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리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4)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 간으로 함

[별표 5] <개정 2016. 8. 26.>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  
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농"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

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 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제배농산물 또는 유기농</li> <li>유기제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li> </ul>
나. 유기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li> <li>유기농○○ 또는 유기○○</li> </ul>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li> <li>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li> </ul>

3. 삭제 <2016. 8. 26.>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

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 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제배농산물 또는 유기농</li> <li>유기제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li> </ul>
나. 유기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li> <li>유기농○○ 또는 유기○○</li> </ul>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li> <li>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li> </ul>

3. 삭제 <2016. 8. 26.>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

- 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와 해당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3)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개정 2017. 12. 28.> [시행일:2019. 1. 1.] 제2호다목4)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 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3)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1) 공통기준		인증	

-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 가. 인증사업자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		
1) 공통기준		인증	

<p>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p> <p>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p> <p>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p>	<p>취소</p>	<p>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p> <p>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p> <p>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p>	<p>취소</p>		<p>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p> <p>3) 유기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p> <p>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마) 조식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인증 취소</p>	<p>3) 유기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p> <p>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p>	<p>인증 취소 인증 취소 인증 취소 인증 취소 인증 취소</p>
<p>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p> <p>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p> <p>다)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p>	<p>인증 취소</p> <p>인증 취소</p> <p>시정 명령</p> <p>인증취 소</p>	<p>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제를 사용한 경우</p> <p>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비산,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p>	<p>인증 취소</p> <p>시정 명령</p> <p>인증취 소</p>	<p>try of Trade try and E</p>				<p>인증 취소 인증 취소 인증 취소 시정 명령</p> <p>인증취 소</p>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아)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자)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차)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 명령	인증 취소
4) 유기양봉 제품	인증 취소			
가)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인증 취소		
다)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라) 유기양봉 제품에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라) 유기양봉 제품에서 꿀벌의 먹이 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 명령	인증 취소
		마)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바)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 명령	인증 취소
		사)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5)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취소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		인증 취소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		인증 취소		

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6)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다)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인증 취소

인증 취소

시정 명령

인증 취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 명령	인증 취소	
라)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6)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비합법적인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시정 명령	인증 취소	

try of Trade  
try and Error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동물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7)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 취소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동물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 취소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 명령	인증 취소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사)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아)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자)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 명령	인증취소
8) 취급자		인증 취소			
가) 유기식품등·무농약 산물 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 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8)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무농약 산물 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 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인증 취소	
나)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산물의 경우			나)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시정 명령	인증취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2)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당하는 경우 (1)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2)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이하로 검출된 유기가공식품·비식용 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다)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	인증 취소	

				판매하는 경우		
				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마)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한 유기농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바)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바.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사.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	시정 명령

				큰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정지		가.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제거·정지		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 변경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자.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기합성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라.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마.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카.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고금		바.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지 및 인증 표시 제거· 정지
다.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시정 명령

3. 행정처분절차

-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신설 2014.10.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행정처분절차

-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삭 제>	
4. 수의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	


[별표 10] <개정 2017. 6. 2.>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제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제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처분횟수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 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1호의2 (법 제35 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 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1호의2 (법 제35 조제2항)	지정 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2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2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3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3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4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4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 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 조 제1항 제5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 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 조 제1항 제5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 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제삼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법 제29 조제1항 제6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 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제삼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법 제29 조제1항 제6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7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7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8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시설이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8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32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9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32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9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가. 법 제33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10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가. 법 제33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 조제1항 제10호(법 제35조제2항)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별표 11] <개정 2017. 6. 2.> [시행일: 2018. 1. 1.] 제3호바목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별표 11]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인리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제배포장, 용수, 종자	1) 제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제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유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제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제배방법	1) <b>유기합성농약</b> 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제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제배포장, 용수, 종자	1) 제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제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유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제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제배방법	1) <b>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b> 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제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의 품질관리 등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b>유기합성농약</b> 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b>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수경제배 및 양액제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b>
마. 기타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인리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b>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b> 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b>유기합성농약 성분</b> 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수경제배 및 양액제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아래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에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최초 신청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조건</b> 을 유지·관리할 것								

	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 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3)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은 「토양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유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이유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b>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b>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b>아래의</b>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분만, 포유, 거세 등 <b>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b>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3)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분만, 포유, 거세 등 <b>축종별 질병 취약 시기</b>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의 2배의 기간을 거칠 것																																				
					<table border="1"> <tr> <th>축종</th> <th>생산물</th> <th>최소 사육기간</th> </tr> <tr> <td>한우·육우</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td> </tr> <tr> <td rowspan="2">젖소</td> <td>식육</td> <td>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td> </tr> <tr>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 rowspan="2">산양</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식육</td> <td>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td> </tr> <tr> <td>돼지</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td> </tr> <tr> <td>육계</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td> </tr> <tr> <td>산란계</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 rowspan="2">오리</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td> </tr> <tr>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메추리</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사슴</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td> </tr> </table>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식육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젖소	식육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식육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p>1) 생축의 수송은 <b>조용</b>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p> <p>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b>외부로부터</b>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p>3) <b>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b>가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b>잔류 허용기준</b>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p>
아.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 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젓소	시유	출생 후 2개월 이내, 분만
산양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시유	출생 후 1개월 이내, 분만
돼지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분만

3) 생산성 축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p>1) 생축의 수송은 축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p> <p>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p>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것</p> <p>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p>
아.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 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별표 12] <개정 2016. 8. 26.>

**무농약농산물의 표시 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관명: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명: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 다. 작도법

-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별표 12]

**무농약농산물의 표시 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 다. 작도법

-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

- 한다.
-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항생제",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무농약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li> <li>○</li> <li>• 무농약제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제배 ○○</li> </ul>
무항생제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li> </ul>

비고

1. 천연·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3] <개정 2017. 12. 28.>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

- 한다.
-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항생제", "(NON PEST ICIDE)",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무농약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li> <li>○</li> <li>• 무농약제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제배 ○○</li> </ul>
무항생제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li> </ul>

비고

1. 천연·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력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고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한제품은 나무부터 라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다)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마)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력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고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한제품은 나무부터 라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다)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라)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li> <li>마)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li> </ul> </li> </ol>

	<p>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p>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p> <p>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	<p>1)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2)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 한다.</p>
다. 제조조성비	<p>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p>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p>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p> <p>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p>아) <b>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음</b></p>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	<p>1)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2)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 한다.</p>
다. 제조조성비	<p>공시를 받으려는 자체에 사용된 원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	<p>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p> <p>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p> <p>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충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충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나. 유해성분 검사	<p>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p>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	<p>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p> <p>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p> <p>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충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충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나. 유해성분 검사	<p>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p>

	<p>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b>병원성미생물과 항생물질은</b>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p>
--	--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한 약해 (藥害)·비해 (肥害) 시험	<p>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p> <p>2)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 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p>
나) 비효 ( 肥效)·비해 ( 肥害) 시험	<p>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제배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한 제배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작물제배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p> <p>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p>
다) 약효 ( 藥效)·약해 ( 藥害) 시험	<p>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제배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한 제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법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p> <p>2) 약효(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방제(%)를 고려하여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p>
라) 예외 사항	<p>「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p>

	<p>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b>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유기합성농약은</b>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p> <p>3) 리신(Ricin)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체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	---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한 약해 ( 藥害)·비해 ( 肥害) 시험	<p>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p> <p>2)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 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p>
나) 비효 ( 肥效)·비해 ( 肥害) 시험	<p>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제배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한 제배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작물제배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p> <p>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p>
다) 약효 ( 藥效)·약해 ( 藥害) 시험	<p>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제배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물에 대한 제배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법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p> <p>2) 약효(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방제(%)를 고려하여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p>
라) 예외 사항	<p>「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p>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건	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정	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건	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정	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삭 제>

광고기준 기제된 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한다.

[별표 14]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 현장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품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 분석을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중양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
- 서류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불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 공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서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종합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광고기준

[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 현장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품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 분석을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
- 서류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불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 공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서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종합심사
  -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결과와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결과와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붙임]  
공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 방법	○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④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나. 품질관리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7.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신청 시 제출, △: 필요 시 제출

[붙임]  
공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 방법	○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④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④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
⑤ 리신(Ricin) 검사성적서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나. 품질관리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7.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신청 시 제출, △: 필요 시 제출

[별표 16]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 가. (생략)
  -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 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4항	판매 금지	공시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 금지	공시 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 취소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다 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 가. (생략)
  -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 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4항	판매 금지	공시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 금지	공시 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 취소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으로 부	법 제43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49조제4항 전단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나)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 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2) 10퍼센트 이상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라)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충균수가 100분의 1	경고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나)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 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2) 10퍼센트 이상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라)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충균수가 100분의 1	경고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이상 (2) 1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 이거나 미 생물의 보 증균수가 1 000분의 1 이상 100 분의 1 미만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6)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 재에 법 제4 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 사항을 위반 한 경우 다. (생략)	법 제49 조제4항 전단	공시 의 표시 변경	판매 금지	

이상 (2) 1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 이거나 미 생물의 보 증균수가 1 000분의 1 이상 100 분의 1 미만		판매 금지 및 회수· 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6)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 재에 법 제4 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 사항을 위반 한 경우 다. (생략)	법 제49 조제4항 전단	공시 의 표시 변경	판매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 유기축산물, [ ] 유기양봉 제품, [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최초 신청,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 동 의 서

-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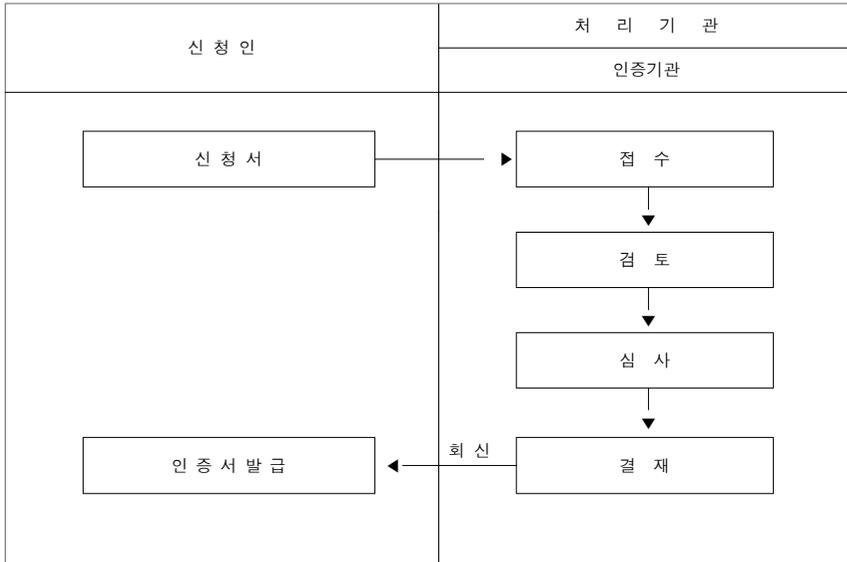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양축용 유기사료,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유기원료 95%이상),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유기원료 70%이상)]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최초 신청,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동의서

-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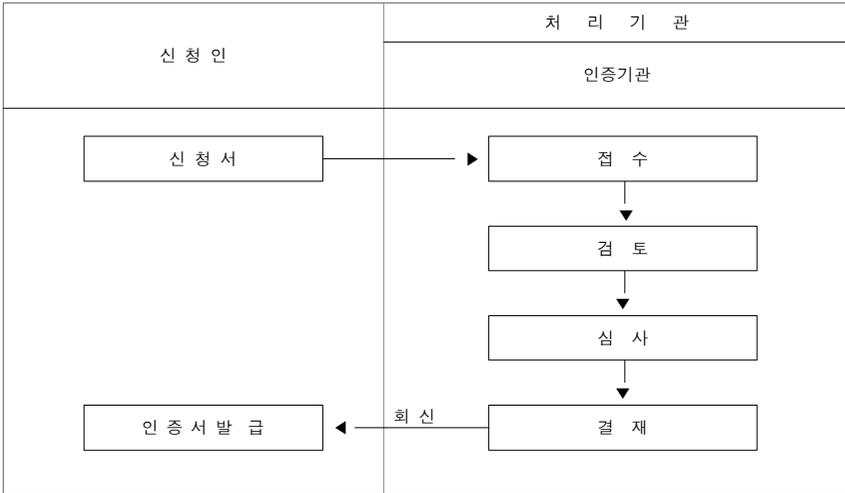
(뒤쪽)

### 작성 방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 거래인증서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인증기관 지정내용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승인 신청 10일
------	-----	------	------------------------

신고인	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신고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승인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업무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인증업무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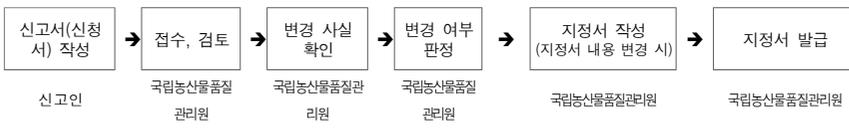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5mm×85mm [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9조 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시판품조사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 확인 및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3.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 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동의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자조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인의 농경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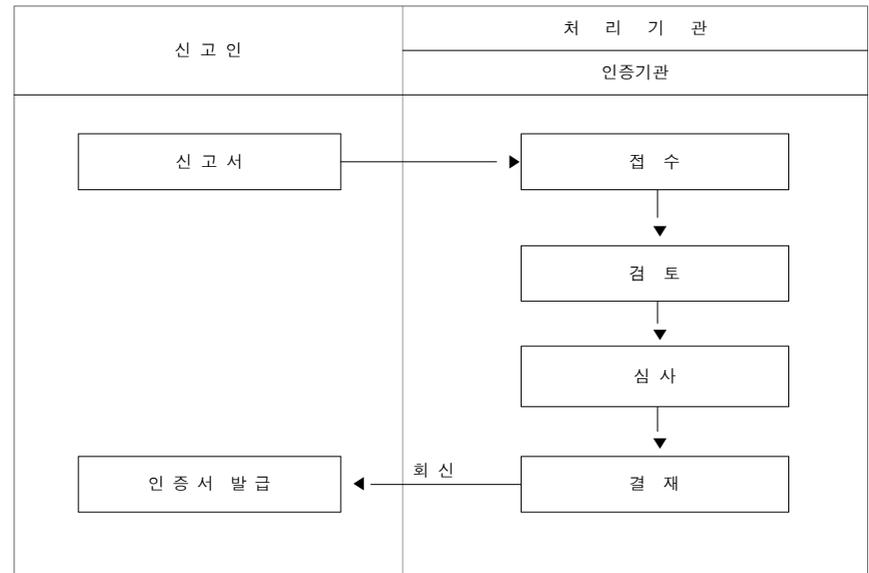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작성 방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 ]변경신고서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10일 변경승인 신청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	20 . . . . ~ 20 . . . . 까지		
변경신고 (변경승인 신청)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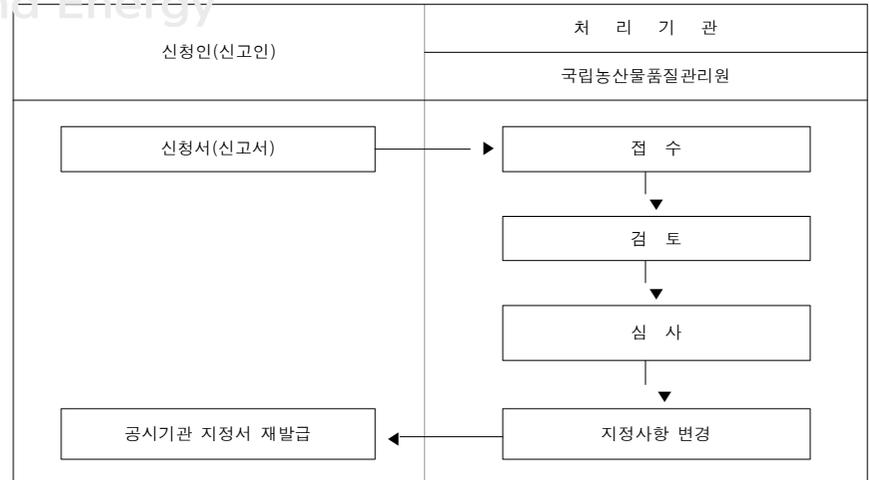
(뒤쪽)

### 작 성 방 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6. 공시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를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연 락 처	044-201-2432



Minist  
Indus